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7

발의연월일: 2021. 1. 12.

발 의 자:하태경·김상훈·김영주

박수영 • 안병길 • 윤영석

이만희 · 이주환 · 정동만

최춘식 · 하영제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과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함.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정청약은 기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함. 그러나 부정청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자로부터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 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	2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	
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u>취</u>	취
소할 수 있다.	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
	항을 위반한 자로부터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
	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